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국민심판을 바라며**

일시 : 2024. 3. 12(화) 10:00

장소 : 한변 회의실(교대역1번출구 우측 길50M 전방,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42 동진빌딩 6층)

1. 8년 전인 2016. 3. 3.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여 법은 8년째 사문화되어 있다.
2.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2016. 3. 2. 11년 만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그 정상적인 시행만 촉구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남한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이고, 핵 공격 대상인 제1의 주적”이라면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교류기구를 전면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사문화된 현행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실효성 있게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① **재단이사 추천 강제** : 법 사문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규정 제12조¹⁾를 개정하여,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른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규정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6조 참조).²⁾
 - ② **법 적용범위 확대** : 북한주민의 정의 규정³⁾을 고쳐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 등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다.
 - ③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 현행 법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북한주민의 알권리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⁴⁾ 이를 명문화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 ④ **북한인권 교육 필요**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통일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법에 초·중·등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증진교육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 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 :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은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향후 기소를 전제로 검사 등 수사전문가의 체계적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과 역할을 명시하여 북한 정권에 반인도범죄의 적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 ⑥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 :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추진키 위해 북한인권재단 등 관련기관의 위상이나 구성 방법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치국가에서 북한인권법은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이 최소한의 노력마저 가로막는 정치세력을 국민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위와 같이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24. 3. 11.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에스더기도운동,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겨레 열통일연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물망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인권시민연합,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와연대, 노체인,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자유실천연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파만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 나라사랑기독연합, 자유민주연구원, 환태평양문화연구원, 한국노년인권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실향민중앙협의회,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북한전략센터, 모두모이자,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 ,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 북한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NANK), 국군포로가족회

※ 연락처: 사단법인 북한인권 [홈페이지 nkhumanrights.org 전화 02-6497-5035]

-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